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 확대〉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8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 확대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형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22.
3. 회부연월일 : 2025. 5.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통상조약에 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민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 확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상조약체결계획, 통상협상의 진행 및 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진행 중 보고받은 협상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u>외교통일위원회</u>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u>외교통일위원회</u> -----.

현행	개정안
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u>외교통일위원회</u>----- ----- -----. -----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 -----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u>외교통일위원회</u>-----.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 ----- -----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u>외교통일위원회</u>-----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자중기위에 수립된 통상조약체결계획(제6조), 통상체결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등 통상협상 진행상황(제10조제2항), 통상조약 서명시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의 결과(제12조) 및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제15조)를 보고하도록 하며,

산자중기위는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제10조제3항).

[표 2] 현행법상 통상협정 및 통상조약에 관한 국회 보고 등

구 분			보고대상
• 진행 중인 통상협상 및 서명이 완료된 통상 조약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제5조)			외통위, 산자중기위, 통상 관련 특별위
보 고 사 항	• 수립된 통상조약체결계획(제6조)		산자중기위
	• 통상협상 진행 (제10조제2항)	1.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산자중기위
	• 조약서명시 협상결과(제12조)		산자중기위
	• 통상조약 이행 상황 평가 (제15조)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산자중기위

구 분			보고대상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제10조제3항)			산자중기위

즉, 현행법은 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가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보고 대상에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 외통위는 포함되지 않는데, 협정서명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등이 발생¹⁾한 바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통위도 각종 국회 보고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심사 내실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1) 외교통일위원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2., p. 499

또한 통상조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전략물자, 군사안보 관련 지침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간 경쟁이 경제·기술분야로 확대·심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거나 대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외통위도 통상조약체결계획, 통상협상의 진행 및 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국회법」상 관련 위원회 회부제도²⁾를 통해 통상 관련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는 점,

현행 통상조약법 제5조³⁾에서도 통상협상 관련 사항이 복수 위원회

2)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회부) 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소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소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필요시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이 상임위 소관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따라 통상조약·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중위가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을 관련 상임위원회⁴⁾ 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⁵⁾로 확대하거나, 협상결과를 외통위에 보고⁶⁾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4) 한정애의원 대표발의(220198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7.19.)

5) 이만희의원 대표발의(220484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23.)

6) 홍기원의원 대표발의(220084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6.24.)

참고

국회보고 관련 주요 규정

○ 국회보고

기본 조항 (제5조)	정부는 외교위·산업위·통상관련특위 요구 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 (제6조)	산업부장관은 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산업위원회 에 보고 ※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등
---	--



통상협상 진행 중 중요사항 변경 시 보고 (제10조)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중요사항 변경, 국내 산업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협상의 진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산업위원회 에 보고 ※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가능
-------------------------------------	--



서명 후 협상결과의 보고(제12조)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산업위원회 에 보고
------------------------	--



비준동의의 요청 (제13조)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 ※ 비준동의 요청시 제출 자료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제15조)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위원회 에 보고
--------------------------------------	--